의안번호	제 548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

발 의 자	황규철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7년 1월 6일

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

(황규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48

발의연월일 : 2017년 1월 6일
발 의 자 : 황규철・이의영・김인수・엄재창・임병운・임회무・이양섭 의원(7인)

1. **제안 이유**

○ 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(2016. 6. 23.)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,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이익보호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**주요 내용**

○ 지역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(안 제4조)

○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(안 제5조)

○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(안 제6조)

○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영세・고령 및 여성 농업인들의 조직화(안 제7조)

○ 기업체와 생산자・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유통・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상생협력사업 추진(안 제9조)

3. **조례안** : 붙 임　　4. **관계법령 발췌** : 붙 임

5. **예산조치** : 총 3,758백만원(도비 658백만원)

6. **관련부서 협의** : 농정국 원예유통식품과와 협의

7. **입법예고** : 2016.12.28 ~ 2017.1.6.(특이의견 없음)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충청북도 지역농산물”이란 도내 각 시·군에서 생산·가공된 농산물로써 충청북도 지역에서 유통·판매되는 것을 말한다.
2. 그 밖의 용어는 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며,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행계획) ①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(이하

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

2.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

3.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

4. 그 밖에 도지사가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)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과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·개설·운영, 판로개척, 컨설팅, 안전성 검사

2. 농산물 직거래 사업 참여 농가 및 사업장, 소비자를 위한 교육·홍보·컨설팅

3.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의 발굴·홍보 및 포상

4.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판촉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

5.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·운영, 홍보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

6.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또는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시·군 및 유관기관, 직거래 사업자, 업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

7.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

8. 광역직거래센터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
9.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 설치) ①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1.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
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8조에 따른다.

제7조(농업인의 조직화) ① 도지사는 영세소농·고령 및 여성 농업인들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② 도지사는 농업인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1. 품목별, 거래처별 작부체계 구축 등 조직화를 위한 사업
2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구매실적 조사 및 평가 등) ① 도지사는 유관기관 및 시장·군수에게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 및 직거래 실적을 매년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유관기관 및 시·군의 지역농산물 등 직거래 실적 등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9조(상생협력사업) ① 도지사는 지역 내 기업체와 생산자·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유통·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 등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, 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」를 폐지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**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**

제6조(시행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“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
2.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
3.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
4. **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**

제12조(농업인의 조직화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할 때에는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

2. 비용 발생 요인

○ 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5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, 안 제7조 영세소농·고령 및 여성 농업인들의 조직화를 통한 지원, 안 제9조 상생협력사업 지원 등

3. 관련조문

○ 안 제5조, 안 제7조, 안 제9조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재정수반요인 : 지역농산물 꾸러미 택배비 지원,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생산자·소비자 교육, 직거래 활성화 사업 등

나. 추계의 전제 : 농산물 직거래 농업인의 지원

다. 추 계 결 과 : 17년 ~ 21년까지 총 3,758백만원(**도비658백만원**) 정도 소요

라. 재원조달방안 : 직거래 활성화 사업(도비18%, 시군비42%, 자부담 40%), 지역농산물 꾸러미 택배비 지원(도비15%, 시군비35%, 자부담 50%),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생산자 · 소비자 교육(도비 30%, 시군비 70%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17년)	2차년도 (2018년)	3차년도 (2019년)	4차년도 (2020년)	5차년도 (2021년)
세 출	3,758	611.6	711.6	811.6	811.6	811.6
직거래 활성화 사업	2,200	300	400	500	500	500
지역농산물 꾸러미 택배비 지원	988	197.6	197.6	197.6	197.6	197.6
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생산자 · 소비자 교육	570	114	114	114	114	114

6. 작성자 : 농정국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호필(☎ 220-3660)

□ 사업별 비용투입계획

단위 : 천원

구분		계	2017	2018	2019	2020	2021
계	계	3,758,000	611,600	711,600	811,600	811,600	811,600
	국비	0	-	-	-	-	-
	도비	658,500	106,500	124,500	142,500	142,500	142,500
	시군비	1,725,500	286,300	328,300	370,300	370,300	370,300
	자담	1,374,000	218,800	258,800	298,800	298,800	298,800
직거래 활성화 사 업 (직거래장터, 로컬푸드 직매장)	계	2,200,000	300,000	400,000	500,000	500,000	500,000
	국비	0	-	-	-	-	-
	도비 (18%)	396,000	54,000	72,000	90,000	90,000	90,000
	시군비 (42%)	924,000	126,000	168,000	210,000	210,000	210,000
	자담 (40%)	880,000	120,000	160,000	200,000	200,000	200,000
지역농산물 꾸 러 미 택 배 비 지 원	계	988,000	197,600	197,600	197,600	197,600	197,600
	국비	0	-	-	-	-	-
	도비 (15%)	112,500	22,500	22,500	22,500	22,500	22,500
	시군비 (35%)	381,500	76,300	76,300	76,300	76,300	76,300
	자담 (50%)	494,000	98,800	98,800	98,800	98,800	98,800
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생 산 자· 소 비 자 교 육	계	570,000	114,000	114,000	114,000	114,000	114,000
	국비	0	-	-	-	-	-
	도비 (30%)	150,000	30,000	30,000	30,000	30,000	30,000
	시군비 (70%)	420,000	84,000	84,000	84,000	84,000	84,000
	자담	0	-	-	-	-	-